

(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) 정보기술(IT)부문 공시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3 항 및 [금융 IT 보호업무 모범규준] 에 따라  
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
1. 공시 사유

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2 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 및 정보보호인력 비율 미충족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총임직원수 (64 명)의 5% 이상 (3.2 명)	정보기술부문인력 (3.2 명)의 5%이상 (0.16 명)	정보기술부문예산(2750 백만원)의 7%이상 (193 백만원)
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<b>미충족</b>	<b>미충족</b>	<b>충족</b>
4.69%(3 명)	0%(0 명)	11.8%(325 백만원)
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
가.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

□ 당사의 데스크탑, 서버, 네트워크 등 전산 인프라 유지 보수는 업무위수탁 계약에 의해 동 계열사 (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)의 전산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나 소속상 당사의 정보기술부문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.

나. 정보보호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

□ 당사의 정보보호업무는 계열사 아시아본부의 정보보호인력 및 당사 정보기술부문인력이 겸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, 겸임하는 정보보호인력을 소수점으로 표기할 수 없어서 0 으로 보고하였습니다.
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
□ 당사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, 2013년 3월 중 실시한 내부 취약점 분석 결과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6. 금융 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
□ 당사는 고객원장으로 (주)코스콤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, 금융 ISAC 과 연계하여 사이버테러등 예방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본 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[투자자지원센터 → 금융투자회사 정보기술부문 공시] 에서 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13. 6. 17.

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 